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706
----------	------

2024년 4월 23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4월 3일, 봉양순 의원 외 24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4년 4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봉양순 의원]

가. 제안이유

-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을 상위법령에 따라 구별하여 명확히 하고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 중 생략되어 있는 '생태계', '소생태계',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를 보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생태계, 소생태계의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신설)

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제9호 신설)

3)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을 상위법령에 따라 구분(안 제3조제 1항 및 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조례에서 사용 중인 주요 용어 정의를 추가 보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법령 합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조례는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가 2022년 전부개정된 것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에서 위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에 따라 조례 제명이 변경된 것임.
- 현행 조례 제3조에서는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보전·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내용이 주로 명시되어 있어, 「생물다양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세분화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안 제2조제1호는 현행 조례에서 40회 사용하고 있는 ‘생태계’ 용어를 상위법령에 따라 신설하여 정의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2호 ‘소생태계’는 동 조례 제27조 생태도시의 조성방안에 명시된 것을 정의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과 법령 합치성을 높이고 있음.

안 제2조제9호는 동 조례 제26조에 명시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정의하는 것으로 생태축 복원, 외래생물 교란 복원, 훼손지 복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생태계 복원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자연환경보전법 및 생물다양성법 기본원칙 조항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1.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2.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4.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5.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자연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자연환경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8. 자연환경을 복원할 때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생태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2. 10.>

1. 생물다양성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국토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하천·호소(湖沼)·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5.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2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2. “소(小)생태계”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9.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 나.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
 - 다.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

라. 「습지보전법」 제3조제3항의 습지보호지역등(내륙습지로 한정한다)에서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

마. 그 밖에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자연환경보전은 법 제3조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②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를 “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1. ~ 6.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① ----- -----.</p> <p>1. <u>“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u></p> <p>2. <u>“소(小)생태계”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u></p> <p>3. ~ 8.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p> <p>9. <u>“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u></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u></p>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

다.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

라. 「습지보전법」 제3조제3항의 습지보호지역등(내륙습지로 한정한다)에서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

마. 그 밖에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 원칙) ① 자연환경보전은 법 제3조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②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② (생 략)

제3조(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 원칙)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은 법 제3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자연경관영향의 검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등으로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자연경관영향검토의 대상사업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인·허가등을 하려면 해당 개발사업 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지역 경계로부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 등

2. (생략)

②·③ (생략)

제17조(생태계서비스지불체계약)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

제15조(자연경관영향의 검토) ① --

1. -----

영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생태계서비스지불체계약) ① -----

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생략)

법 제2조제10호-----

② (현행과 같음)